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 10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과 다케시마의 취급

No.1 수록 자료

1945년(쇼와 20년) | 1949년(쇼와 24년) | 1950년(쇼와 25년) | 1951년(쇼와 26년) | 1952년(쇼와 27년)

일본

포츠담 선언 수락, 각종 제한
SCAPIN-677 등(4페이지 참조)

→ **각종 제한 해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폭격 훈련 구역으로 재지정

미국

1947년경 준비 작업 개시
미국 국무부 내에서 평화조약 초안 작성을 위한 준비가 시작됨

1949년 11월 2일 미국 초안
국무부가 초안을 작성. 일본이 보유할 섬들이 열거되며 일본이 포기할 조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다.

1949년 11월 시볼드 주일 정치고문 대리가 다케시마에 대한 의견서를 전보(14일)와 문서(19일자)로 국무장관 앞으로 송부

※미국은 일련의 관계국과의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영국과의 협력하에서 대일 강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공동 초안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1951년 1월경부터 미영 간에서 협의를 진행하였다.

1949년 12월 29일 미국 초안 No.1
국무부가 초안을 작성. 일본이 보유할 섬에 다케시마가 포함되었다. 이 초안의 주석서에서는 다케시마를 다른 나라로부터 영유 주장을 받은 적이 없는 일본 영토로 나타내고 있다.

1950년 8월 7일 미국 초안 ※간소화
초안 전체의 구성이 재검토되어 일본에서 분리될 영역만을 규정하는 구조가 되었다. 조문상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역이라는 규정도 없어졌다.

1951년 3월 23일 미국 초안 No.3
포기할 조선에 관한 조항이 '일본은 조선, 타이완 및 평후제도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만 규정되었다.

1951년 5월 3일 미영 공동 초안 No.7
영역 조항에 대해 영국 초안(일본을 선으로 에워싸는 방식, 다케시마를 선 밖에 둠)은 철회되고 제2장 영역 제2조에서 '일본은 조선(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 [타이완 및 평후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라고 규정되었다.

1950년 4월 강화를 위해 활동
J. F. 덜레스가 국무장관 고문으로 임명되어 강화를 위해 활동하기 시작함

1950년 9월 11일- 대일 강화 7원칙
미국이 초안을 작성하고 요점을 7개 항목으로 정리해 극동위원회 구성국에 제시

1950년 10월 24일 호주의 질문에 답변
다케시마는 예로부터 일본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일본이 계속 보유할 섬이라고 답변함

1951년 4월 25-5월 4일 미영 사무 레벨 협의 No.6
제7차 협의(5월 2일)에서 일본 영토에 대해 일본의 영역을 선으로 에워싸는 영국 초안의 방식이 포기되고 일본이 포기할 영토만 기재하는 미국 초안의 구조를 취하기로 미영이 일치. 그것을 바탕으로 도서의 귀속을 명확화하기 위해 일본이 포기할 조선의 섬을 명기하기로 합의

※미국은 7월 19일의 한국의 요구를 받아서 조사를 한 결과 '독도'와 '파랑도'를 특정하지 못했으나 8월 2일의 주미 한국 대사 서한에 '독도'의 위도와 경도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특정할 수 있었다.

1951년 8월 10일 한국의 요구를 거부 No.9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답변.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조선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독도에 관한 요구를 거부하였다(이른바 '러스크 서한'. 동 서한에서 '파랑도'에 관한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1952년 12월 4일 러스크 서한을 재통지 No.10
'한국령의 일부'인 다케시마 상공에서 미군기가 폭탄을 투하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에 관한 한국 정부의 1952년 11월 10일자 항의에 대해 미국 정부는 다케시마의 영유 인식은 이른바 '러스크 서한'(→No.9)과 같다고 답변함

②한국의 요구와 미국의 답변

1951년 6월 14일 개정 미영 공동 초안
미영 공동 초안이 개정되어 제2조 (a)에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조약 서명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1951년(쇼와 26년) 7월, 개정 미영 초안은 연합국 및 한국을 포함한 관계국에 제시되어 협의에 부쳐졌으나 제2조 a항의 조선 포기 규정은 변경되지 않고 채택되었다.

영국(영연방)

1947년 8월 26일-9월 2일 캔버라 회의 No.2
영연방 제국이 대일 강화 조약에 관한 방침을 토의. 영국은 일본과 가까운 어떤 도서도 영유권에 문제가 남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문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했다.

1950년 10월 19일 호주가 질문
대일 강화 7원칙에 대해 미국에 질문. 구 일본령의 처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요구

답변을 영국과 공유

1951년 4월 7일 영국 초안 No.3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선으로 에워싸고 오키와 다케시마 사이에 그 선을 그음

1951년 4월 23일 No.4
영국은 영국 초안이 일본의 영역을 선으로 에워싸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로 영토 귀속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의 분쟁 발생과 그것이 공산주의 국가를 이롭게 할 우려를 들며 미영 양측의 초안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①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

1951년 4월 영국이 제안 No.5
미국 초안에서는 일본이 포기할 조선에 속하는 섬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미영 사무 레벨 협의에 임해, 미국과 협의하면서 조선에 속하는 섬의 이름을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6월 한국 전쟁 발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회부

1951년 7월 19일, 8월 2일 한국 정부가 초안 수정을 요구 No.8
개정 미영 공동 초안에 대해 조선 포기에 관한 조항에 '독도'(다케시마임)와 '파랑도'를 추가할 것을 요구

1952년 1월 18일 한국에 의한 '해양 주권 선언'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킴. 일본을 포함한 각국이 해양의 자유에 반한다며 해당 라인의 설정에 대해 항의했으며, 일본은 해당 라인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항의함(4페이지 참조)